

-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 -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5년 3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5년 3월 8일

제안 이유

-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-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,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. (안 제2조)
- 충청북도의 조례, 규칙, 훈령, 지침, 지시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가 청구대상으로 함. (안 제3조)
-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함. (안 제5조)
- 도지사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 (안 제6조)
-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함. (안 제7조)

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나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, 그리고 부패의 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청구하여 이를 개선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관한 시야를 넓혀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부패유발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중 20세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- 청구는 문서로 하되, 제도개선 청구사항, 청구취지, 청구이유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아울러 청구된 사항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「충청북도 감사위원회」의 자문을 받아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, 제도개선 사항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곧바로 60일 이내 제도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그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공직내부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이었으나, 이를 탈피하여 도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조리 요소를 발굴 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안 제2조에서 청구권자를 도민 뿐만 아니라 단체까지 포함할 경우, 자칫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명분아래 단체의 이해관계사항 등을 직접 반영한 제도개선이나 제도개선 결과에 대하여 불복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.

- 아울러 조례시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택·시행된 제도개선안중
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도민이나 단체의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
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